보험공단,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 다 만,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2.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

- (보험금 지급지역 안내) 표준약관 제31조(보험금의 지급) 2항 및 3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.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, 회사는 피 보험자 또는 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(보험금 지급지연 이자) 표준약관 제31조(보험금의 지급) 4항에 의거 규정 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. 그러나 계약자.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.

3. 주소변경 통지

• 표준약관 제26조(주소변경통지)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 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

4.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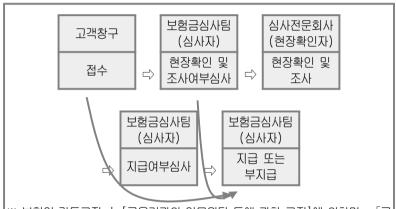
• 표준약관 제20조(소멸시효)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.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 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5. 주요 안내 내용

- 1.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 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- 2.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L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(주소: www.LIG.co.kr)
- 3.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(SMS)로 각종정보(담당자 및 연락처,제지급금 등) 를 제공하여 드리고,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(전자우편) 발 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(제지급금, 각종안내,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)

- 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.
- 4.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 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- 5. LIG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 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(대표전화 : 1544-0114)

6.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



※ 보험업 감독규정 中 [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]에 의하면. 「금 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 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.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

구 분		적립기간	적립이율	
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		보험료를 받은 기간	예정이율 + 1% (단,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)	
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		반환기일 ^{주1)} 디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 (단,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)	
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		보험료를 받은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	
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	회사의 고의/괴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	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	보험가	P대출01율
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	지급기일 ^{주인}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	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보험계약대출01율	
만환급금	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일린 경우		1년 이내	예정이율의 50%
		지급시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	1년 초과	1%
	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	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	예정이율	
	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		예정이율 + 1%	
	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	보험계약대출01율	

구 분		적립기간	적립이율		0)율
र्ट्स्यान	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시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	지급시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	보험기간 만기일이내		예정01율
			보험 기간	1년 이내	예정이율의 50%
			만기 이후	1년 초과	1%
	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		예정이율		
	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		예정이율 + 1%		
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		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보험계약대출01율		
해지환급금		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	1년(OILH	예정이율의 50%
		청구일까지의 기간	1년:	초과	1%
		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	예정이율 + 1%		율 + 1%
		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	보험계약대출() 물		

- ※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, 소멸시효(상법 제662조)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- ※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주1) 보험료 반환기일 :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
- 주2) 지급기일
 - 신체손해 보험금 :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- 재물손해/배상책임손해 보험금 :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
 - 환급금 : 청구일부터 3영업일

가입자 유의사항

□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

1.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

○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

-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,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.
-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 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.

○ 부활(효력회복)

-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 단, 15세미만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인 경우 는 부활일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.

○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

-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,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,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.
- 특히, 치매보장의 경우 보장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설명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

-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,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 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○ 갱신형 보장

-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,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-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.

2.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

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(모집수수료, 계약유지관리비용 등)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한편,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(공시이율, 보험계약대출이율 등)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□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

○ 암 관련 보장

-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 (보험대상자)의 경우 암보장개시일(책임개시일)은 계약일로 합니다.
-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(예 : 1년 등)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.
-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, 미세바늘흡인검사(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)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.

○ 특정질병 관련 보장

- 암,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○ 간병 관련 보장

- '활동불능상태'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, 식사, 목욕,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180일이

- 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- 중증치매상태'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고 180 일이상 COR척도 3점이상의 '인지기능장애'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.

○ CI 관련 보장

- 이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 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,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수술 관련 보장

-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(예 :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,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)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○ 입원 관련 보장

-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○ 상해 관련 보장

-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○ 교통상해 관련 담보

- '휴일'이라 함은 토요일과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'로 하며,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다.
- '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'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(오토바이,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)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○ 어린이보험

-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, 해당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○ 태아보험

-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출생전 자녀(태아)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(보험대 상자)로 합니다.
-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 험자(보험대상자)로 합니다. 단, 계약자 요청시 다른 출생자를 피보험자(보 험대상자)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실손의료비 관련 담보

-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, 상해통원형, 질병입원형, 질병통원형, 종합(상해와 질병을 말합니다)입원형, 종합통원형 등 총 6 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계약자는 이들 6개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당!	보종목	보상하는 내용		
<u>상해</u>	<u>입원</u>	<u>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상해</u> 로 인하여 <u>병원</u> 에 <u>입원</u> 하		
		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		
	<u>통원</u>	<u>피보험자(보험대상자)</u> 가 <u>상해</u> 로 인하여 <u>병원</u> 에 <u>통원</u> 하여 치		
		료를 받거나 <u>처방조제</u> 를 받은 경우에 보상		
71H	<u>입원</u>	<u>피보험자(보험대상자)</u> 가 질병으로 인하여 <u>병원</u> 에 <u>입원</u>		
		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		
질병	<u>통원</u>	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		
		하여 치료를 받거나 <u>처방조제</u> 를 받은 경우에 보상		
	<u>입원</u>	<u>피보험자(보험대상자)</u> 가 <u>상해</u>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		
종합		<u>병원</u> 에 <u>입원</u>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		
	통원	<u>피보험자(보험대상자)</u> 가 <u>상해</u>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		
		<u>병원에 통원</u> 하여 치료를 받거나 <u>처방조제</u> 를 받은 경우		
		에 보상		

○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

-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(공제계약 포함)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(보통약관, 특별약관)의 내용을 따릅니다.